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2020. 4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ecutive Summary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진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전 세계 경기 부진이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이는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닌 실물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변동성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신계약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산 구성 고려 시, 환해지비용 증가, 수익증권 가치 감소, 대출채권 손상 증가 등이 우려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금리 하락과 저금리 지속은 보험회사의 당기순익과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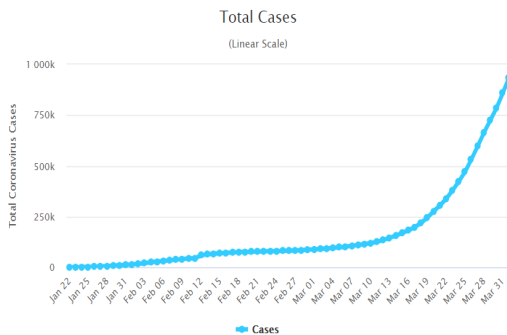
I 코로나 위기, 그리고 장기화

■ 신종 코로나(Covid-19, 이하 ‘코로나 19’라 함)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가 ‘실물경제 부진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함

● (사태 장기화) 코로나 19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감염병 위기는 2020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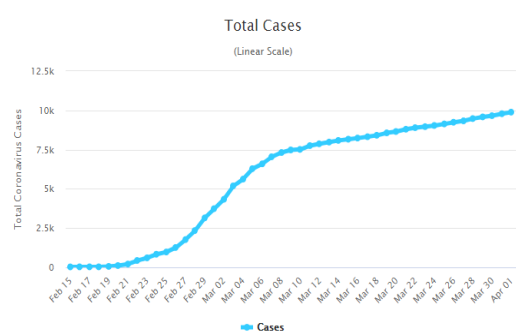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1-1〉, 〈그림 1-2〉 참조)
- 코로나 19는 초기 예상과 다르게 기후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사태가 하절기까지 지속되거나 가을 이후에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림 1-1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



자료: worldometer(2020. 4. 3)

▶ 그림 1-2 한국 코로나 19 확진자 수



자료: worldometer(2020. 4. 3)

■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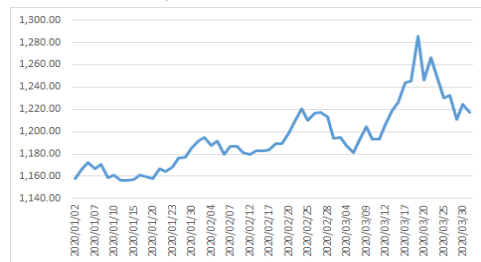
- **(경기 침체)** OECD는 중국 및 주요국의 경기 부진을 이유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함¹⁾
 - 자가격리 등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소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경제주체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시장 변동)** 코로나 19 확산 이후 투자자들의 국내외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로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고 채권시장의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음
 - KOSPI는 2월 14일 2,243.6 포인트에서 3월 19일 1,457.64 포인트로 35%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빠른 속도임(〈그림 I-3〉 참조)
 - 원·달러환율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최대 1,285.7원으로 8% 가량 상승함(〈그림 I-4〉 참조)
 - 장단기 및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신용스프레드(BBB-)는 1월 평균 6.695%p에서 3월 31일 7.215%p로 확대됨(〈그림 I-5〉, 〈그림 I-6〉 참조)
- **(금리 하락)**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2.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함

▶ **그림 I-3 KOSP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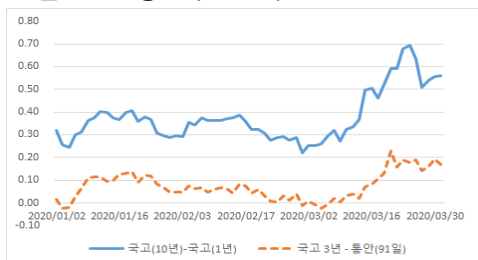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그림 I-4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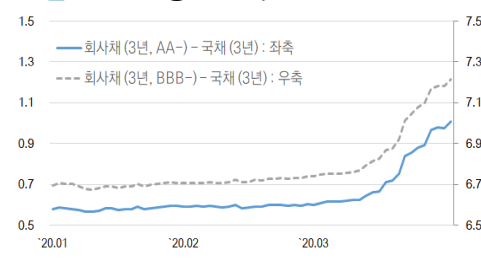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그림 I-5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ECOS

▶ **그림 I-6 신용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ECOS

1) OECD(2020. 3. 2), "OECD Economic Outlook"

📖 코로나 19 확산은 과거 SARS, MERS 발생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례가 없는 사건임

- 이번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점에서 지난 금융위기와 차이가 있음
 - 지난 금융위기는 부채 및 금융상품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나,
 - 이번 코로나 19 위기는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 부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과거 SARS와 MERS 등의 감염병은 그 확산 기간이 길지 않아 실물 부문은 물론 금융시장 영향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위기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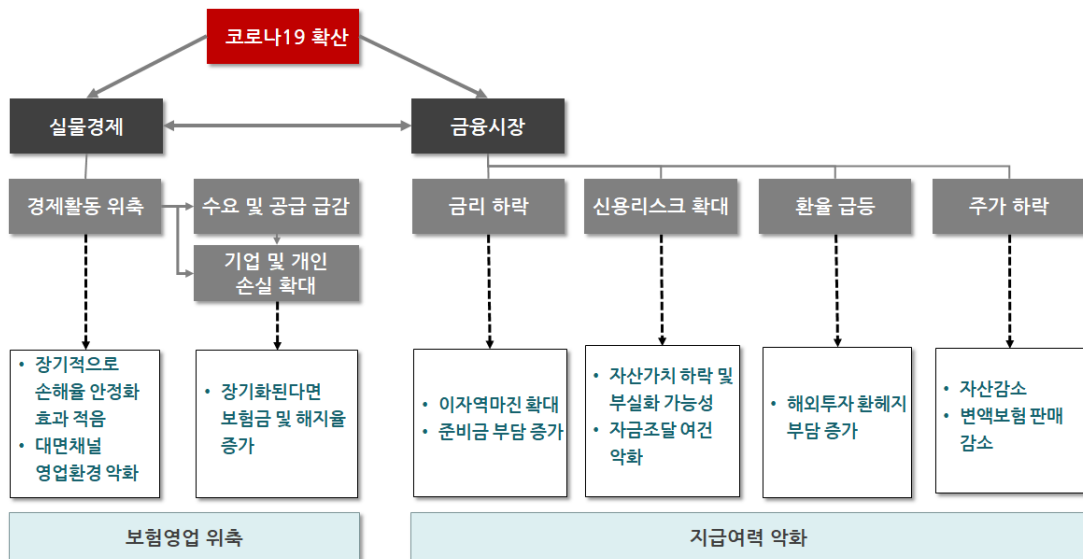
보험산업 영향

1. 코로나 19 영향

■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매출과 보험금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주가, 신용스프레드,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그림 II-1 코로나 19(Covid-19)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2. 보험영업 위축

가. 보험금 비용

■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진단비·치료비, 여행 중단·취소 등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거의 없고,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은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 **(의료비)** 기본적으로 전염병의 검사비·진단비 등을 직접·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음
 - 다만, 일부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사망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가 의료비를 보상하는 부분은 보장하지 않음
- **(영업중단)** 신종 감염병을 원인으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 상품은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업휴지보험²⁾을 제공함
 - 다만, 국가행정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될 경우에도 관련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 판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여행취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여행자보험은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취소 시 그에 따른 위약금을 보상하지 않음
 - 여행취소 특약은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비용만 보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감염병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외출 자제 및 의료이용 축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소 효과가 기대되나, 감염병의 재해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음

- **(손해율 하락)**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사망률 급등 및 대규모 보험금 청구 가능성은 낮으며,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청구가 감소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비급여를 비롯한 의료이용의 실질적 총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그림 II-3〉 참조)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차 이용 확대와 사고 건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손해율 개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손해율 상승)** 감염병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³⁾ 신종 코로나 위기 이후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진료 및 청구 증가, 건강보험 보장범위 강화도 예정되어 있어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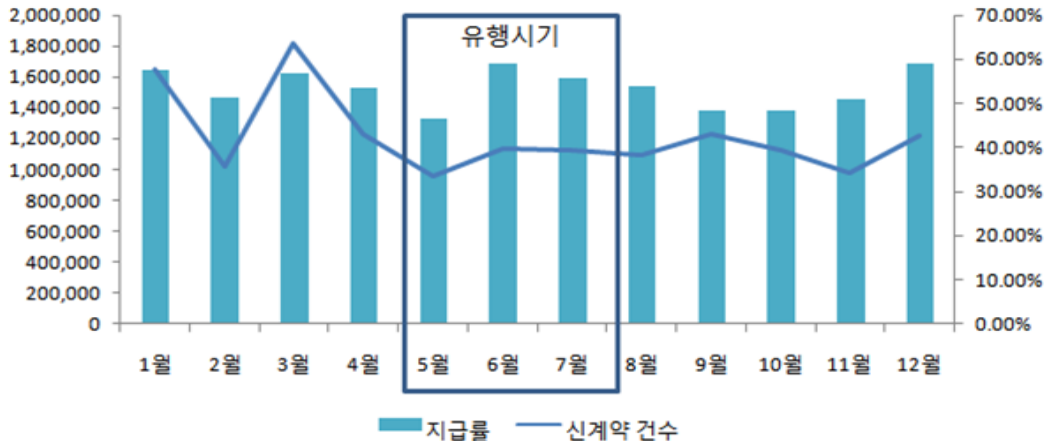
2) 송윤아(2020. 3. 16),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모형 검토」, 『KIRI 리포트』

3) 김창호(2020. 4. 2),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 2000년 이후 발생한 SARS 등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확산 기간이 길지 않아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음(부록 표 1) 참조)

- **(영향 미미)** 신종인플루엔자A와 MERS 발병 시 실손보험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산업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함(그림 II-2) 참조)

▶ **그림 II-2** 2015년 MERS 확산 시 국내 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률 및 신계약 건수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반면, 코로나 19의 확산이 장기화된다면, 보험회사의 손해율과 해지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금)**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의 사망 및 질병률 급등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음
- **(재보험자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재보험회사의 손해를 증가는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재보험자산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계약 해지)**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보험계약의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나. 보험료 수익

■ 2020년 상반기 신계약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 **(대면채널)** 코로나 19가 2월 중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고객 발굴에서 계약 체결까지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보험회사의 대면채널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됨
 - 예정이율 인하를 앞둔 2~3월에는 보험료 인상 전 영업 활동 강화가 예상되는 반면, 4월 이후는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비대면채널)** 반면 코로나 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비대면채널은 신계약 비중이 작고 판매하는 상품 또한 제한적이어서 대면채널의 영업실적 악화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더구나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산근무제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비대면채널의 활성화에는 제약이 걸린 상황임

3. 자산위험 증가

■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자본 감소와 신규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감소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자산 가치)** 주가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자산(주식,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부동산PF대출 등)의 가치 하락(또는 손상)으로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고, 보증준비금을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환헤지비용)** 환율 상승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의 원화환산 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나지만, 환헤지 비용도 증가하면서 파생상품을 환헤지에 활용하는 경우 증거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 **(준비금 추가적립)** 한편, 금리 하락은 보유 채권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만, 시가평가 요소를 지닌 준비금(LAT 준비금, 일반 및 변액 보증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 **(투자수익률)** 또한 금리 하락은 신규 채권의 수익률을 감소시켜 채권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보험회사 특성상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은 불가피함

▶ 표 II-1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가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달러가치 강세		금리 하락		부동산가격 하락
자산	대상	주식	회사채, 대출채권	외화 증권	환헤지 포지션	보유 채권	신규 채권	부동산, 부동산PF대출
	영향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채	대상	보증준비금	보증준비금	-		LAT준비금, 보증준비금		보증준비금
	영향	부정적	부정적	-		부정적		부정적

❑ 환헤지 비용의 증가, 수익증권의 가치 감소, 대출채권의 손상 증가 등이 우려됨

- **(생명보험)** 상대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달러가치 강세에 의한 환헤지비용 증가 및 증거금 관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임(〈표 II-2〉 참조)
- **(손해보험)** 상대적으로 수익증권 및 위험대출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회사는 주가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또는 손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임(〈표 II-3〉 참조)
- **(산업평균과 괴리)** 특정 위험자산군의 쏠림 현상이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경로는 회사별로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표 II-2〉, 〈표 II-3〉 참조)

▶ 표 II-2 생명보험 자산구성비의 회사별 분포(2019년 6월 말)

자산구성비(%)		최소값	제1분위수 (25%)	중위수 (50%)	제3분위수 (75%)	최대값	산업평균 자산구성비
주식	국내	0.0	0.1	0.5	1.1	12.1	4.3
	해외	0.0	0.0	0.0	0.0	1.8	0.0
채권	국내 무위험 ¹⁾	3.3	32.7	40.5	56.3	82.3	41.9
	국내 위험 ²⁾	3.5	4.8	8.6	12.2	45.0	6.3
	해외	0.0	4.5	11.7	20.1	26.2	13.8
수익 증권 ³⁾	국내	0.1	2.1	10.5	14.4	24.3	7.8
	해외	0.0	0.0	0.5	1.8	5.2	1.2
대출 채권	보험계약대출	0.6	3.8	5.7	6.8	9.0	6.6
	담보대출	0.0	0.0	3.0	4.6	9.2	6.0
	위험대출 ⁴⁾	0.0	0.6	5.6	9.5	40.9	6.9
	부동산	0.0	0.0	0.5	1.8	7.0	1.8
	투자부동산	0.0	0.0	0.3	1.3	2.4	1.2

주: 1) 국·공채 및 특수채

2) 금융채 및 회사채

3) 기타유가증권을 포함

4) 신용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표 II-3 손해보험¹⁾ 자산구성비의 회사별 분포 (2019년 6월 말)

자산구성비(%)		최소값	제1분위수 (25%)	중위수 (50%)	제3분위수 (75%)	최대값	산업평균 자산구성비
주식	국내	0.0	0.0	0.8	1.4	6.4	2.5
	해외	0.0	0.0	0.0	0.1	1.2	0.1
채권	국내 무위험 ²⁾	9.6	17.8	26.6	34.7	95.5	26.6
	국내 위험 ³⁾	0.0	5.0	7.7	10.9	45.9	8.4
	해외	0.0	0.0	7.5	13.7	19.9	11.6
수익 증권 ⁴⁾	국내	0.0	10.6	20.3	29.7	36.9	13.7
	해외	0.0	0.0	1.4	3.7	15.8	2.2
대출 채권	보험계약대출	0.0	0.1	4.7	6.9	8.9	6.4
	담보대출	0.0	0.0	4.0	8.6	18.0	11.3
	위험대출 ⁵⁾	0.0	0.8	8.0	15.0	21.2	11.2
	부동산	0.0	0.0	1.7	3.2	9.2	2.4
	투자부동산	0.0	0.0	1.0	1.5	3.7	1.1

주: 1)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특정 보험종목이나 재보험만을 취급하는 회사 제외)

2) 국·공채 및 특수채

3) 금융채 및 회사채

4) 기타유가증권을 포함

5) 신용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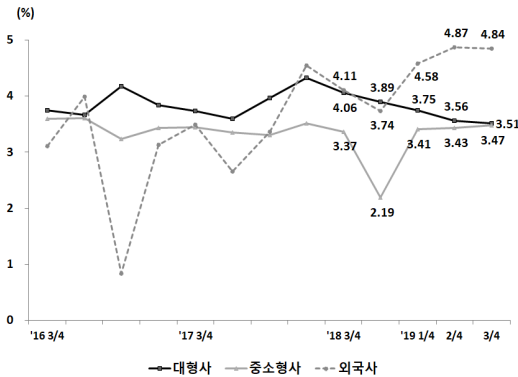
4. 지급여력 약화

☐ 코로나 19로 인한 금리 하락과 저금리 지속은 보험회사의 당기순익과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최저보증)** 시장금리 하락 폭에 비해 부담금리 하락 폭은 작은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 당기순익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본가치의 감소를 초래함(그림 II-3), (그림 II-4) 참조
 - 보험료적립금에서 최저보증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금리확정형 보험료적립금의 비중은 65%임
 - 다만, 자본가치의 감소는 부채를 원가로 반영하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에는 반영되지 않고 LAT에만 제한적으로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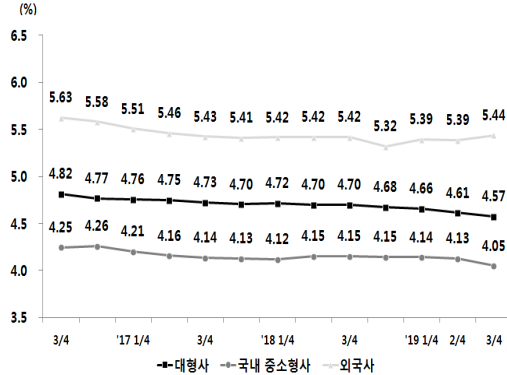
- **(역마진)** 2019년 3/4분기 현재 생명보험 보험계약자계정의 이자마진은 대형사 -1.06%p, 중소형사 -0.58%p, 외국사 -0.60%p임

▶ **그림 II-3**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운용자산손익/기중운용자산×연 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4** 보험료적립금 그룹별 평균 부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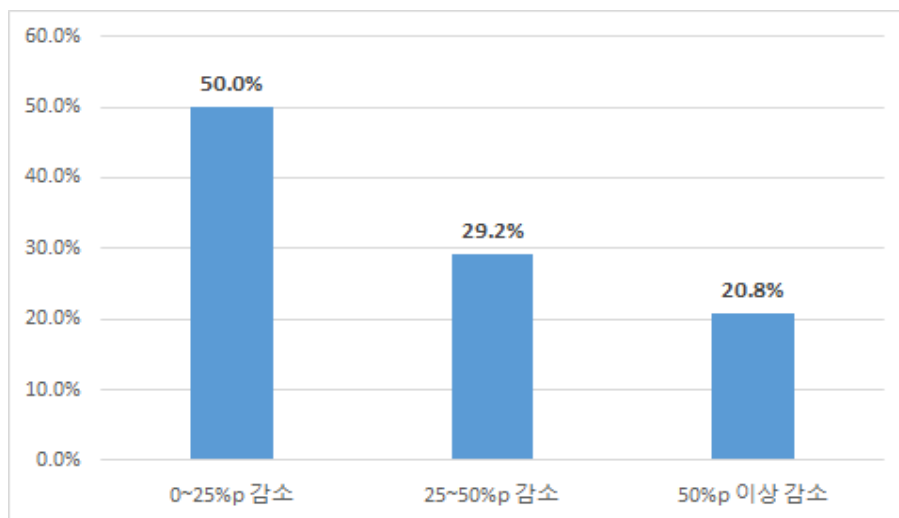


주: 운용자산이익률=운용자산손익/기중운용자산×연 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험회사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이 차지하고 있어 신용스프레드 확대와 금리 하락이 주가 하락보다 보험회사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임**

- **(채권 중심 운용)** 운용자산 중 국내 채권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표 II-2〉, 〈표 II-3〉 참조)
 - 주식의 경우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면 생명보험 평균 보유비율은 1% 미만으로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산업 전체적인 주가 하락 영향은 미미함
- **(RBC 신용위험)** 신용스프레드 확대는 대다수 채권의 신용등급 하향을 통해 신용등급에 민감한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표 II-2〉, 〈표 II-3〉 참조)
 -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의한 부도율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이 초래할 요구자본 증가는 RBC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부채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 비율은 장기금리 1%p 하락 시 평균적으로 30%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II-5) 참조
 - 전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20.8%가 K-ICS 비율이 50%p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영향 추정은 금리 하락이 보험부채 증가를 통해 가용자본이 감소하는 정도만을 고려함

▶ **그림 II-5** 금리 100bp 하락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K-ICS 비율의 변화 분포



III

보험부문 정책 대응

- 금융당국은 보험부문이 ①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②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함
- **(금융서비스 강화)**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회사가 저금리 환경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고 극단적인 대외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함

1.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

가. 운영부담 완화

- 단기적으로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유럽)** 유럽보험감독국(EIOPA)은 보험회사의 사업 유지를 강조하고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기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함⁴⁾
 - **(미국)** 금융당국(FRB, CFPB, FDIC, NCUA, OCC, CSBS)은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의 금융 니즈를 금융기관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하고, 금융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및 감독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함⁵⁾

4)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5) FRB(2020. 3. 9), "Agencies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meet financial needs of customers and members affected by coronavirus"

나. 위험보장 강화

■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험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코로나 19 입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건강보험상품 운영을 독려함
- **(홍콩)** 보험감독청(IA)은 대면채널의 모집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보완하여 우편물 청약철회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함
- **(미국)** 뉴욕금융감독당국(NYDFS)은 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의 보장 내용을 가입자에게 분명하게 공지하도록 함
 -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회사가 정액 또는 정률 형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비상 규정을 채택함
- **(영국)** 행위규제청(FCA)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여행자보험), 신계약에 대한 면책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함(건강보험)

■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중단 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⁶⁾

- **(시장 활성화)** B2B거래의 특성상 제한적이기는 하나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원)** 특히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 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다. 보험계약 유지

■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 **(중국)** 은행보험감독청(CBIRC)은 보험회사에 전염병 예방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품 혁신 및 소비자보호 개선을 요구함
- **(태국)** 보험감독청(OIC)은 코로나 19 감염자에 대해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4월까지 면제하고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손해보험의 보험료 분납을 허용하고 4월까지 여행보험의 시작/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약관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함(〈부록 표 2〉 참고)

6) 송윤아(2020. 3. 16),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2. 금융안정성 제고

■ 보험회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영향)** 금융당국은 코로나 19가 개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K-ICS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금리 하락)** 준비금 추가적립과 더불어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여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산가격 하락)**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연성 확보)**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가 기준 지급여력제도의 기계적인 운영은 과도한 행정개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EU)** Solvency II에서는 경과조치, 회복기간연장 등 다양한 보완조치를 통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시장 하락, 저금리 환경의 지속, 충격이 큰 재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자본규제 미충족으로 인한 감독당국의 개입을 유예할 수 있음
- **(영국)** 급격한 금리하락에 대응하여 감독당국(BOE)은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 경과조치에 대한 재산출을 허용함

부록

부록 표 1 역대 감염병 비교(2020. 3. 16 기준)

(단위: %, 명)

구분	SARS	신종인플루엔자A (H1N1)	MERS	신종 코로나 (Covid-19)
발견장소	중국	미국	사우디	중국
확산국	32개국	129개국	24개국	144개국
발견시점	2002.11	2009.3	2012.6	2019.12
유행시기	2002.11~2003.7 (9개월)	2009.4~2010.8 (1년5개월)	2012.4~2015.11 (3년8개월)	2019.12 ~현재
한국 유행시기	2003.4~7	2009.5~2009.12	2015.5~9	2020.1월 말~현재
국제감염자	8,439	알 수 없음 (약 163만 명 추정)	2,494	167,511
국제사망자	812	151,700~575,400	858	6,606
국제치사율	9.60%	1.00%	34.40%	3.94%
국내감염자	3	763,759	186	8,320
국내사망자	0	270	39	81
한국치사율	0.00%	0.04%	20.96%	0.97%

자료: 1) SARS: WHO(2003. 7. 4), "Cumulative Number of Reported Probable Cases of SARS"

2) 신종인플루엔자A: CDC(2019. 6. 6), "2009 H1N1 Pandemic-Summary of Progress since 2009"; 질병관리본부 (2010. 9. 24), 「신종인플루엔자 판데믹」

3) MERS: WHO(2019. 11), "MERS Situation Update"

4) 코로나 19: WHO(2020. 3. 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 - 55"; 질병관리본부 (2020. 3. 15 0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발생동향」

▶ 부록 표 2 코로나 19 관련 보험회사 지원 현황(2.7~3.12)

지원사항	세부내용	
	누적(2.7~3.12)	신규(3.7~3.12)
신규 자금지원	• 보험계약대출 신속지급* - 1,288,075건, 3조 2,724억 원(전체) - 110,664건, 2,814억 원(대구·경북)	• 보험계약대출 신속지급* - 189,540건, 5,525억 원(전체) - 15,993건, 443억 원(대구·경북)
기존계약 지원	• 대출만기 연장 - 336건, 127억 원 • 보험료 납입유예 - 65건, 1.1억 원	• 대출만기 연장 - 166건, 63억 원 • 보험료 납입유예 - 46건, 1.05억 원
사회공헌활동	• 기부 및 의료장비·물품 지원 - 24건, 28.8억 원 • 임대료 감면 - 4건, 2.3억 원	• 기부 및 의료장비·물품 지원 - 10건, 5.7억 원 • 임대료 감면 - 3건, 2.3억 원
기타 내수진작	• 성과급 조기집행 • 구내식당휴무, 물품 조기구매 등	• 구내식당휴무, 물품 조기구매 등

주: *: 신종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 대출금을 모두 포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 부록 표 3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 조치

국가	기관	조치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차보고가 늦어진 상장보험회사 및 기타 상장회사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2. 원격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IT분야에 적용되는 '네트워크분리규칙' 적용 면제를 확대함
중국	CBIRC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1.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통제 관련 법안을 최소 8건 이상 발표 2. 보험회사에 대고객 원격소통창구 마련과 원활한 활동을 유지할 것을 당부 3. 보험회사에 감염병 예방 및 보험금 청구서비스, 제품혁신 및 소비자보호를 개선할 것을 요구 4. 보험회사의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자제를 요청
홍콩	IA (Insurance Authority)	1. 감염위험 감소를 위한 보험판매조치를 3월 31일자로 완화함 - 세금공제 적용 거처식 연금 및 민간 건강보험상품에 적용 - 완화조치에는 중개업자의 재무요건분석이 포함되고, 우편발송서류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 2. 보험료 유예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병원규제를 완화하며 입원비 지급청구절차를 단순/신속화하고 기타할인혜택 제공을 보험회사에 장려함
일본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1. 보험회사의 핵심 언더라이팅 및 상품판매 조건을 완화하지 않음 2. 코로나 19 관련 질의에 관한 보험소비자 핫라인을 구축함
	보험회사	1. 보험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 제공, 파트타임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라고 함
싱가포르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1. 민간 건강보험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비 지급 및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진단 및 입원비 전액 지급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 2. 신중한 위험평가를 유지하되, 바이러스 감염 고객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노력을 촉구
태국	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1. 4월 30일까지 보험료납입을 면제하고, 추가로 60일 연장가능 * OIC는 최근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통하여 태국 보험산업이 전반적으로 견재하고 코로나 19 상황 지원이 가능하다고 평가
	생명보험회사	1. 2월 27일부터 4월 30일 기간의 생명보험 갱신과 6개월 이내 전환 대상 보험계약자에 대한 갱신 및 전환 조건을 완화함 2.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4월 30일까지 무이자 분납을 허용하고, 약관대출금액 상한선을 완화함
	손해보험회사	1. 재산보험 등에 보험료 분납을 허용하고, 4월 30일까지 여행보험의 여행 시작/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인도	IRDAI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1. 보험회사가 코로나 19와 관련된 병원비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코로나 19 관련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기 전에 보험청구심사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행함 2. 매개성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특정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는 코로나 19의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국가	기관	조치
호주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1. 생명·건강보험회사와 의사소통 강화 2. 규제 대상 기업의 자본 및 유동성의 적정성 평가가 우선 과제 - 지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 보고는 지속하지만, 보고 기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보류되고 있음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1. APRA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우선 대응을 위한 2020년 감독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있음
	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1.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감염병을 면책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이 보장받지 못함을 소비자에게 경고함 2. 기업휴직보험은 물리적 손상만 보장하므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은 면책 - 감염병을 이유로 당국이 사업중단을 권고한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
	Financial Services Council	1.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처리 및 고객문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감염병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
유럽	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1. 3월 20일, 감독보고·공개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 2. Solvency II 영향평가 검토 기한을 2020년 6월 1일로 연장 3. 현재 시장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필수요소로 정보요청을 제한 4. 2019년 연차보고와 관련하여 각국 감독기관에 유연한 적용을 촉구 - 구체적인 접근법 조율 예정 5. EIOPA는 감독보고와 관련하여 SFCR 제출은 최대 8주 연장을 허용하되 가장 중요한 정보항목에 대해서는 2주의 유예기간을 허용 - SFCR에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영국	Bank of England	1. 영국기업 및 가계의 충격은 대규모이나,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힘 2. 영국 경제 및 금융시스템지원을 위한 법적책임 관련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Lloyd's of London	1. 사업연속성 계획 및 직원 지침을 발표
	행정부	1. 일자리유지 계획,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연기, 사업중단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 - 영국기업은행(the British Business Bank)을 통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420만 달러(500만 파운드) 제공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1. 보험회사의 규제 보고 연기
	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국가	기관	조치
독일	BaFin	- 가능한 조치 및 비상계획에 관하여 시장참여자들과 의사소통 강화 - 감독보고 제출 기한을 최대 8주 연장함 - 마감 기한의 연기는 보험회사들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BaFin은 개별 보험회사가 코로나 19 영향을 신뢰성 있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봄
	GDV (German Insurance Association)	- 현재까지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글로벌 무역 공급망 붕괴와 관련한 연쇄반응의 영향이 문제
이탈리아	IVASS (Istitutor per la vigilanza sulle assicurazioni)	Solvency II의 국가별 변동성 조정(VA: Volatility Adjustment) 적용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
아일랜드	CBI(Central Bank of Ireland)	- 보험회사와 관련한 특별규정이나 지침을 발표하지 않음 - 보험회사 및 규제대상기업들이 적절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부문과 협력하여 상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
룩셈부르크	CSSF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Chief Financier)	- IT 보안이 갖추어진 경우 원격 근무 허용을 제안 - 전문가들은 사업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행보장을 위해 사전허가를 면제
미국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3월 5일 모든 보험회사에 공지 - 기업건강보험으로 코로나 19 검진비용 보장 - 가입자의 적시 진료 보장 - 가입자의 모든 의학적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 3월 18일 모든 건강보험회사에 비상사태 선포 - 코로나 19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을 제공할 비상계획 제출 요구
	NYDFS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건강보험회사가 코로나 19에 대응하도록 일련의 조치 공표 - 보험계약자에게 보장 혜택을 알리고 질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며 소비자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개선에 자원을 집중 - 코로나 19 검진 비용 면제 등 검진장벽 제거 -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네트워크 밖의 서비스 제공의 예외도 허용 - 네트워크 내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정책/정률 비용분담)을 면제해주도록 함 - 기업휴직보험을 제공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업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한 설명서를 발송할 것을 요구

저자약력

- 김 해 식 St. John's Univ. 경영학 석사 / 연구위원(총괄)
(E-mail : haeskim@kiri.or.kr)

- 조 영 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거시환경)
(E-mail : youngcho@kiri.or.kr)

- 김 석 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보험영업)
(E-mail : skim@kiri.or.kr)

- 노 건 엽 KAIST 통계학 박사 / 연구위원(지급여력)
(E-mail : gynoh@kiri.or.kr)

- 황 인 창 KAIST 경영공학 박사 / 연구위원(시장위험)
(E-mail : ichwang@kiri.or.kr)

- 김 동 겸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시장위험)
(E-mail : dgkim@kiri.or.kr)

- 손 민 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연구원
(E-mail : sms27@kiri.or.kr)

CEO Report 2020-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발 행 일	2020년 4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3775-903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